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의 판단방법에 대한 리해

백 영 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23폐지)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불법침해행위로 하여 발생된 재산적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불법침해행위로 하여 발생된 재산적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우자면 가해자의 불법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과학적으 로 정확히 확정하여야 한다.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불법침해행위와 재산상손해사이의 객관적이며 필연적인 련관관계를 관찰하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가해자의 불법침해행위를 원인 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것을 밝히는것을 손해보상법 상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라고 한다.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서 불법침해행위가 재산상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되는가 하는것을 밝히는데 중점을 둔다. 즉 누구의 불법침해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였는가 하는 객관적인 사실원인을 확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의 판단방법에서 나서는 방법론적문제에 대한 리해를 잘하는 것은 불법침해행위로 하여 재산상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책임당사자를 정확히 확정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권리를 원만히 회복시켜주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런것만큼 불법침해행위로 하여 재산상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보상책임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 그것은 누구의 불법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누구에게 얼마만한 재산상손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것을 판단한 다음에야 그에 대한 손해보상책임의 당사자를 확정할수 있는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는것은 손해보상책임당사자를 확정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로 된다.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자면 가해자의 침해행위가 재산상손해발생의 원인으로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놓고 판단하여야 한다.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의 판단방법에는 무엇보다먼저 하나의 원인으로 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의 원인으로 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은 가해자의 침해행위를 하나의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인 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가해자의 침해행위를 하나의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가해자의 침해행위가 없어도 재산상손해가 발생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것을 놓고 인과관계를 판단할수 있다.

가해자의 침해행위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재산상손해결과가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가해자의 침해행위와 손해결과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여야한다. 그러나 반대로 가해자의 침해행위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재산상손해결과가 그대로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침해행위는 손해결과에 대하여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원인으로 판단하여야한다. 다시말하여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서 가해자의 침해행위가없었다고 가정할 때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침해행위를 손해발생의 원인으로보이야하며 만일 침해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하여도 재산상손해가 발생하면 그 침해행위를 손해발생의 원인으로 보지 말아야한다는것이다. 이것을 가해자의 침해행위가 없었다고가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한다고 하여 배제하는 방법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방법은 주로 가해자의 적극적인 침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초래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해자의 침해행위를 하나의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한 가해자의 침해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교체하여도 그러한 재산상손해가 발생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것을 놓고 인과관계를 판단할수 있다.

가해자의 침해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교체하여도 그러한 재산상손해결과가 여전히 발생하면 가해자의 침해행위와 손해결과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가해자의 침해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교체하였을 때 그러한 재산상손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침해행위를 손해결과에 대하여 결정적의의를 가지 는 원인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서 가해자 의 침해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교체하였을 때 그러한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침해행위를 손해발생의 원인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합법적인 행위로 교체하였어도 그러 한 재산상손해가 발생하면 그 침해행위를 손해발생의 원인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다. 이것을 가해자의 침해행위를 합법적인것이라고 교체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한 다고 하여 교체하는 방법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방법은 주로 가해자의 소극적인 침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초래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다수 불법침해손해보상사건들에서 배제하는 방법이나 교체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불법침해행위와 재산상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수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원인에 의 하여 손해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우의 방법을 적용하는것은 합리적인것으로 될수 없다.

공동침해행위(여러 가해자가 불확정적인 경우)인 경우 원인에 대한 사실판단에서 어떤 요소가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필연적인 련판으로 되였는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다시말하여 단순한 사실사정에 대한 판단으로서는 행위와 손해사이에 확정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의 판단방법에는 다음으로 여러 가해자의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 가해자의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해자의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여러 가해자의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추긴자의 추김행위로 하여 실행자가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추김행위가 실행자의 침해행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놓고 인 과관계를 판단할수 있다.

추긴자의 추김행위가 실행자의 침해행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면 그 추김행위와 손해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추긴자의 추김행위가 실 행자의 침해행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았다면 추김행위와 손해결과사이에 인과관계 가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추긴자의 추김행위와 실행자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가 발생한경우 배제하는 방법으로서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판단할수 없다. 만일 추긴자의 추김행위가 없어도 실행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실지 침해할 의사를 가지고있은 경우 배제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면 추긴자의 추김행위와 손해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될수 있다. 추긴자가 이와 같은 근거로 손해보상책임에서 면제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불공정한것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우의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배제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자면 반드시 원인이 결과의 발생에 중대한 촉진적작용을 하였다는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추긴자의 추김행위가 실행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침해한 동기에 결정적작용을 하였을 때에는 추긴자의 추김행위도 인과 관계에서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추긴자와 실행자에게 련대손해보상책임을 지워야 한다.

여러 가해자의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한 가해자가 침해행위를 하도록 기회를 조성시킨자의 행위로 하여 피해자에게 재 산상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기회를 조성시킨 행위가 가해자의 침해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주지 않았는가를 놓고 인과관계를 판단할수 있다.

기회를 조성시킨자의 행위가 가해자의 침해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기회를 조성시킨 행위와 손해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회를 조성시킨 행위가 가해자의 침해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그 행위와 손해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회를 조성시킨자의 행위와 가해자의 침해행위로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기회를 조성시킨 소극적인 행위를 손해결과사이의 원인으로 보고 기회를 조성시킨자에게도 련대손해보상책임을 지워야 한다.

여러 가해자의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한 둘 또는 그 이상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침해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손 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제하는 방법이나 교체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할수 있다.

여러 가해자들의 침해행위가 하나의 전일체를 구성한다고 인정되면 그들의 침해행위를 손해결과사이의 원인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추긴 행위나 불법침해행위의 기회를 조성시킨 행위들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서 공동의 불법침해행위와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수 있지만 법적책임에서는 같은 련대적인 손해보상책임을 지워야 한다.

공동의 불법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류의할것은 둘 또는 그 이상 당사자들의 각자의 행위자체로써는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결합되면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하는것이다.

둘 또는 그 이상 당사자들의 각자의 행위가 개별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이 결합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들각자의 행위 를 손해발생의 원인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것은 그들각자의 행위가 손해를 발생시킨 요 소로 되며 그중의 하나만 없어도 손해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둘 또 는 그 이상 당사자들의 행위의 결합으로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들모두에게 련대 적인 손해보상책임을 지워야 한다.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의 판단방법에는 다음으로 여러개의 원인으로 하여 하나의 손해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개의 원인으로 하여 하나의 손해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은 둘이상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인과 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둘이상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결과가 발생한 경우 우선 동시에 존재하는 둘이상의 행위들이 원인으로 되여 손해결과를 발생시켰지만 그중 임의의한 원인만으로도 같은 결과의 발생을 초래하는데 충분한것이라면 둘이상의 행위와 손해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것으로 판단할수 있다.

동시에 존재하는 둘이상의 행위가 원인이 되여 손해결과를 발생시켰지만 그중 임의의 한 원인만으로도 같은 결과의 발생을 초래하는데 충분한 경우를 둘이상의 행위가 다행위자들의 적극적인 행위와 소극적인 행위에 의한 경우로 갈라볼수 있다.

동시에 존재하는 둘이상의 행위가 원인이 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지 만 그중 임의의 한 행위만으로도 재산상손해를 발생시키는데 충분한 경우이라면 그 모두 를 재산상손해결과사이의 원인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동시에 존재하는 둘이상의 행위로 하여 재산상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것을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판단하고 행위자들에게 련대적인 손해보상책임을 지워야 한다. 다만 각자의 행위와 손해결과사이의 원인의 크기를 확정할수 있다면 분할적인 손해보상 책임을 지울수 있을것이다.

둘이상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손해결과가 발생한 경우 또한 둘이상의 원인중에서 개별적인 원인들이 최종적인 손해결과를 발생시키는데 충분한 원인으로 되지 못하고 일정한 손해결과만을 초래하며 그 원인들이 중첩되여 최종적인 손해결과를 발생시켰다면 둘이상의 원인과 최종적인 재산상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것으로 판단할수 있다.

둘이상의 원인중에서 개별적인 원인들이 최종적인 손해결과를 발생시키지는 못하지만 그것들이 중첩되여 최종적인 손해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 원인모두를 최종적인 손해결과의 원인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것은 둘이상의 원인중에서 개별적인 원인들이 최종적인 손해결과를 발생시키지는 못하지만 그것들이 중첩됨으로 하여 최종적인 손해결과가 발생하였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둘이상의 당사자들이 각기 수행한 행위들이 간접적으로 중첩되여 최종적으로 동일한 손해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각자의 행위들을 인과관계에서의 원인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자의 허물의 정도나 원인의 크기 비률에 따라 해당한 손해보상책임을 지워야 하며 가해자들이 자기 행위의 원인의 크기나 발생된 손해부분

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련대적인 손해보상책임을 지워야 한다.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서 류의할것은 우에서 언급한 방법들중 어느 한 방법을 절대적인것으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이다. 그것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것이 불확정적인 내용들에 대한 추상적인 방법이라는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손해보상법상 인 과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우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 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서 제기되는 방법론적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정확히 밝힘으로써 불법침해손해보상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